

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-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 실태 파악 필요

2. 위탁기관

- 보건복지부(요양보험제도과)

3. 법적근거

- 조사 실시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조의2(실태 조사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1.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
 2.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(이하 “등급판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의 규모,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
 3.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
 4.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,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통계 대행

「통계법」 제23조(통계작성에 관한 협조)

-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4. 조사연혁

- 「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」 최초 실시(2019년 9월)
 - 국가승인통계 제117104호 / 결과 공표 (2020년 3월)

< 통계대행 선정 추진 경과 >

- ▶ '22년 통계대행 수요 제출(보건복지부→통계청, '21.5.) 및 대행 선정('21.12.)
- ▶ '22년 통계대행 의뢰(보건복지부→통계청, '22.1.)

5. 조사대상 및 규모

- (조사모집단)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 등
- (표본규모) 11,000명 내외
 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, 장기 요양기관 및 요원

구분	계	수급자	기관	요원(종사자)
표본수(명·개소)	11,000	4,500	2,000	4,500

- (조사지역) 전국

6 조사내용

- (장기요양급여 수급자)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, 수급자의 규모,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, 장기요양급여에 의한 변화 등
- (기관) 기관의 운영형태 및 점유형태, 기관직원 현황과 인력관리, 장기요양요원 교육, 기관의 안전사고 발생 대응 등
- (요원) 급여유형별 직종별 근무 형태 및 근로 조건, 부당한 경험, 질병 및 사고 경험, 처우개선 등

7. 조사방법 및 기간

- (조사방법)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(필요시 자기기입식 조사), 인터넷조사
 - 조사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조사 신규 도입
 - * '수급자 가족'에 한해서는 전화조사 병행 가능

- (조사기간) 2022. 7. 12. ~ 7. 25.(14일간)
 - ※ 인터넷 조사 : 7. 12.~7. 21.(10일간)
 - (기준시점) 2022. 7. 1.
 - (준비조사) 2022. 7. 11.(1일간)
 - * 조사 기간은 현장조사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8. 표본설계

- (목표모집단)
 - 수급자: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
 - 기관: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
 - 요원: 급여유형, 직종별 장기요양요원
- (조사모집단)
 - 수급자: 2022년 1월 말까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, 1월 급여청구 유형별 수급자
 - 기관·요원: 급여유형 및 직종별 2022년 1월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이 있는 기관, 요원
 - 제외: 주소불분명 및 도서지역
- (표본추출틀)
 - 자료출처: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수급자 목록 및 급여 청구 실적
 - 추출단위: 급여유형·직종별 수급자, 기관, 요원
- (표본추출방법) 층화계통추출(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)
 - 분류지표
 - 수급자: 연령층, 장기요양인정등급, 지역, 성별, 시도
 - 기관·요원: 설립유형, 지역, 시도

9. 조사체계

